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



[인천지방법원 2023. 8. 25. 2023고합159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피고인 1 외 1인 【검 사】이혜진(기소, 공판), 최진혁(공판) 【변 호 인】변호사 김지수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17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.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.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. 압수된 증 제10, 15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